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이해와 활동사례

조은경 (사)이케이 윤리지식연구소 대표

EKI (Ethics & Knowledge Institute)

목 차

1.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배경
2.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필요성
3.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권한·운영절차
4. 청렴시민감사관 직무별 활동사례
5. 청렴한 사회를 향한 한 걸음

1.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배경

1-1. 한국 반부패·청렴 법제

- ✓ 감사원 (1963) 심계원+감찰위원회
- ✓ 공직자윤리법 (1981)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윤리
- ✓ 금융실명제 (1993) 금융기관과 거래시 실명사용
- ✓ 행정절차법 (1996)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 규정,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확보
- ✓ 정보공개법 (1998) 국가 등에 대하여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 **부패방지종합대책** (1999)

- ✓ **부패방지법** (2001) 부패행위 근절, 내부고발자 보호
- ✓ **부패방지위원회** 설립 (2002)
- ✓ 공무원행동강령, 청렴도 측정 (2003)
- ✓ 부패방지 시책평가 (2004)
- ✓ **국가청렴위원회** (2005),
- ✓ 부패영향평가 (2006)
- ✓ **국민권익위원회** (2008) →
국가청렴위원회 + 고충처리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
- ✓ **청렴옴부즈만** (2009)
- ✓ 공익신고자보호법, 청렴연수원 (2011)
- ✓ **청렴시민감사관** (2013),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
- ✓ 청탁금지법 (2015)
- ✓ 공공재정환수법 (2019)
- ✓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2021)

1-2.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

- ✓ 부패방지위원회(2002)
 - ⇒ 국가청렴위원회(2005)
 - ⇒ 국민권익위원회(2008)
- ✓ 국민권익위원회
 - : 국가청렴위원회 + 고충처리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
- ✓ 청렴옴부즈만(2009) ⇒ 청렴시민감사관(2013)

1-3. 청렴시민감사관은 옴부즈만에서 유래

✓ 옴부즈만(Ombudsman)

: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agent)'

✓ 다양한 용어로 사용

- 미국 호민관 (Public Protector)
- 영국 커미셔너 (Commissioner)
- 오스트리아 국민의 변호인 (People's Attorney)
- 프랑스 위임받은 중재자 (Mediateur)
- 한국 호민관, 민정관, 행정 감찰관, 옴부즈만

✓ **청렴옴부즈만**

: 공공기관의 부패취약분야에서 국민을 대리해 감시·조사 등 부패 사전예방 활동

1-4. 청렴옴부즈만 ⇒ 청렴시민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 가이드라인(2014.12)

✓ 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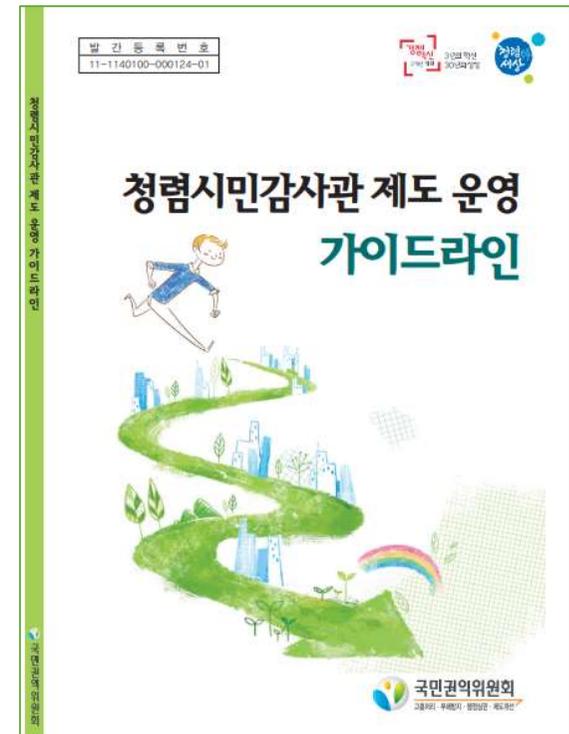
- 2009년 ‘청렴옴부즈만’ 운영 제안 ⇒ 2013년 ‘청렴시민감사관’ 명칭 변경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 공공기관의 부패 취약분야 등에 대하여
- 감시·조사 등을 하는
- 사전 예방적 부패 통제 시스템

✓ 목적 및 기능

- 부패방지 및 청렴성 제고를 목적으로
-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 기능



옴부즈만 vs 청렴시민감사관 비교

구 분		옴부즈만	청렴시민감사관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국민)의 대리인 · 공공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민원, 부패, 위법·부당 행정행위 및 공무원의 권력 오·남용 등)을 접수하여 전문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 · 필요한 경우 시정 요구 또는 권고하여 시민(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갈등 해소 역할 	
차 이 점	직무 관할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되지 않음 · 행정기관의 행정 전반 다룸 	·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
	자격요건	· 공공분야에 대한 전문성	· 공공분야 전문성 + 청렴성, 반부패 의식

감사 vs 청렴시민감사관 비교

차이점	감사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주체	· 기관 내부 구성원(감사담당자)	· 기관 외부에서 위촉한 시민 또는 전문가
절차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적 · 개개인의 비리 적발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적(예방적) · 비리 사전 예방, 제도 개선 건의·제안
판단기준	· 법규 등에 의한 판단	· 법규 등, 건전한 상식에 의한 판단(합목적성 등)

2.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필요성

2-1.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필요성

- ✓ 행정의 복잡 다양성, 전문화로 공공기관의 행정 재량권 확대
: 국민 권익 침해 가능성 증대 및 부패 개연성 증가
- ✓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기능, 부패방지 및 비리근절의 한계표출
: 외부 통제 강화 필요
- ✓ 부패 사전예방 및 투명성·신뢰성 확보
: 부패 취약분야 감사·조사·평가 및 제도 개선

[사례]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Tip •

○○○○년 ○월 ○○ 청렴시민감사관은 ○○기관에서 발주한 ○○시스템 설치공사 사업자선정 평가회를 참관하던 중 2개사가 제출한 자료 중 오자 부분까지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2개사 간의 담합을 의심하여 감사를 요구하였다. ○○기관 자체 감사 결과 담합으로 결론을 내려 ○○○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 조사에서도 담합으로 확정하여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공공기관은 공사를 재발주하였고, 그 결과 담합 당시 245억원(낙찰율 99.7%)이었던 ○○시스템 설치 공사는 146억원(낙찰율 75.0%)에 최종 낙찰되었다. ○○기관은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통하여 관련 분야의 입찰 질서를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9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2-2.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기대효과

- ✓ 행정의 투명성 증대 및 신뢰성 제고
- ✓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
- ✓ 효율적인 예산집행
- ✓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 관행의 근절

3. 청렴시민감사의 직무·권한·운영절차

3-1. 공공기관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

- ①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 감시·조사 및 평가
 - 주요 사업 : 공사, 용역, 물품·구매, 위탁사업 등
 - 부패 취약분야 : 인·허가, 현장 단속, 인사 채용 등
- ② 부패 관련 민원 조사·처리와 제도 개선 건의·요구
- ③ 시정 요구 등의 이행실태 점검(사후관리)
- ④ 부패방지(예방), 청렴 정책 자문, 평가 및 의견 제시
- ⑤ 부패 예방 교육(행동강령 등)
- ⑥ 감사 요구·참여(감사 동행 등)
- ⑦ 모니터링(민원, 비위 제보, 인사 채용 참관 등)
- ⑧ 그 외 청렴 문화 확산 활동 등

- 모니터링·참관, 입찰·채용 평가, 부패영향평가, 감사품질평가, 공모전 심사·선정
- 청렴(윤리)경영위원회 참여, 핫라인신고제도, 노조면담 및 권익위 권고사항 논의
- 징계(인사)위원회 참여
- 임직원 인터뷰, 의견청취, 소통창구

3-2. 공공기관 청렴시민감사관의 권한

- ① 직무와 관련한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 ② 부패관련 제도, 관행 등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그 조치 결과에 대한 회신 요구
- ③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결과에 대한 공표
- ④ 부패행위와 부패 취약(의심, 우려 등) 분야에 대한 감사 요구
- ⑤ 기관장 직접 보고 : 활동결과 직접 제출, 면담 요청 등
- ⑥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한 직접 감사 참여
- ⑦ 부패관련 민원(비리 제보, 자체 수집 등) 조사 등

3-3. 공공기관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절차

- ① 대상 사업 선정
- ② 해당 부서의 자료 제출
- ③ 청렴시민감사관의 자료 검토 및 조사
- ④ 1차 조사 보고서 작성
- ⑤ 해당부서 검토 및 의견 제출
- ⑥ 해당부서의 의견 검토 후 청렴시민감사관 최종 보고서 제출
- ⑦ 기관(장, 관련 부서)의 수용·반영 여부 결정 후 청렴시민감사관에 회신

4. 청렴시민감사관 직무별 활동사례

4-1.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 감사·조사 및 평가

(1) 사업 및 취약분야 평가

0000부 공무국외여행 사후심사

(현황)

0000부 '공무국외여행' 연간약300여건, 출장인원 연560여명

현행 '0000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은 전체 공무국외여행 허가 중 일부에 대한 사전 심사를 규정하고 있을 뿐 사후 적정성 검토 과정은 없음

(목적)

사전심사는 긴급한 경우 형식적인 검토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사후 검토는 계획대비 실적의 평가를 통해 향후 보다 내실있는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 제고

(결과의 처리)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개선 요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감찰 후 처분조치

< 공무국외여행 심사절차 >

• 분기별 '공무국외여행' 리스트 제출
국제협력 ⇨ 감사

○ 국제협력담당관은 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공무국외여행' 리스트 및 계획서, 보고서를 감사담당관에 제출

• 사후검토대상 선정

○ 감사담당관은 해당 리스트를 청렴옴부즈만 회의에 제출
- 각 옴부즈만은 리스트 중 10건 내외 무작위 추출하여 검토대상 통보
- 검토대상의 계획서, 서약서, 보고서 등 제출

감사 ⇨ 청렴옴부즈만회의

• 적정성 검토

○ 옴부즈만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적정성 여부 검토
○ 검토사항: 결과보고의 적정성 여부, 당초 계획일정 준수 여부, 예산의 적법사용 여부 등

청렴옴부즈만회의 ⇨ 감사

○ 검토결과를 회의에서 채택(개선 등 요구)

• 검토결과 통보
감사 ⇨ 국제협력

○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통보

4-1.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 감시·조사 및 평가

(2) 계약 및 민원서류 검토

공단 청렴옴부즈만
계약 및 민원 서류 검토 의견서

- 검토자 : 조은경
- 검토 항목
 1. 계약관련 검토 : 1억이상 계약 7건
 2. 민원서류 검토 : 240건

- 계약관련 검토의견

제출된 계약관리대장의 내용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만, 계약 6, 7번의 경우, 적격심사가 좀 더 객관적이고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담당자 1인이 심사기준에 따라 주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계약 사항의 전문성을 감안하더라도 1억원 이상이라는 금액의 비중을 고려하여 외부 평가자의 참여나 동료 직원의 평가 확인이 병행되면 훨씬 공정하게 보이겠다는 생각입니다. 타 기관의 기술평가 시에 보통 외부 전문가가 3~5인 정도 참여하여 평가되는 것과 비교하여 제안하는 의견입니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까지 할 사항이 아니라면, 동료 직원이 확인란에 서명하고 검증해 주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민원서류 검토의견

민원서류 검토와 관련하여 지난번과 달리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고 신속한 답변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귀 기관의 노력이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민원서류 검토 결과, 질의와 제안의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질의입니다. 많은 민원들이 법규정이나 전문지식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문이 드는 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부재한 업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소규모이면서 전문지식이 부족한 업체들에서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공단에서 관련 전문지식을 알려주지만 이런 기관들이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얼마나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면가 혹은 여타 대책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질의사항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업무에 번거로우시겠지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1.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 감시·조사 및 평가

(3) 현장점검

청렴옴부즈만 현장방문 일정표

▣ 사업명 : 국고보조선 아라미 3호 건조

구분	시간	주요내용	비고
1	이동 09:30~12:30 3:00	· 본사 → 군산 · 선박 건조 현장 (군산시 소룡동 소재)	· 업무용 차량 이용 · * 12:30~13:30(중식)
2	현장방문 및 확인점검 13:30~15:30 2:00	· 사업현황 보고 및 청취 · 선박 건조 주요공정 확인 · 등 현장 점검 · 현장직원 등 면담	· 업무담당자(감독관)
5	이동 15:30~18:30 3:00	· 군산 → 본사	

* 상기일정 및 이동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구분	시간	장소	내용
1일차 : 6.14(금)			
위촉식	11:00~11:15	상임감사위원실 (본관 2층)	✓영점 및 티타임 후 천마정 이동
	11:15~12:15	천마정	✓위촉장 수여와 서약서 징구 ✓중식
이동	12:15~14:00	회사→김포공항	✓복지관 앞
	14:00~	2일차 : 6.15(토)	
목장견학	조식 및 이동 8:00~10:00	인근식당	✓조식 후 제
	제주 시설 견학 10:00~12:00	제주경마공원	✓제주경마장 ✓시설견학(모
석식	18:00~	인근식당	✓ 중식
자유시간 /취침	20:(
기타 견학 및 이동	13:00~17:00	인근 목장 등	✓말산업과 수 있는 기 하여 적의 ✓더마파크(국 ✓폐가수스목
이동	17:05~18:10	제주→김포	✓비행기OZ8

4-2. 부패 관련 민원 조사·처리와 제도 개선 건의·요구

(1) 제도개선 권고

청렴옴부즈만 시정·권고 등 건의서	
유 형	<input type="checkbox"/> 부패유발 분야 시정·권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업무개선 권고 <input type="checkbox"/> 비위사실 제보 <input type="checkbox"/> 기타
건 명	"0000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야간작업관리 및 감독관 보험건
내 용	<input type="checkbox"/> 현 황 가. 사업개요 나. 현장조사 - 0000공단 청렴옴부즈만 3인 사업현장 방문 - [redacted]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현장조사 시, 태풍 등 예기치 않았던 일기상황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어 일조건 혹은 야간 등에 작업이 실시되고 있음을 보고 받음 - 공단 관리감독자 1인이 하루 16~18시간동안 작업 감독 <input type="checkbox"/> 문제점 - 피로누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정규 근무시간 외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확 - 항만에서 배로 이동하여 폐기물전송수거선에 탑승하여 감독이 이루어지는바, 전 구간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클에도 공단파견 관리감독자에 대한 보험 등 미비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관리감독자 증원을 통한 교대 감독으로 안전사고 발생 등 예방 권고 (향후, 현장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여 2인1조 근무까지 검토할 것을 제안) - 직원안전사고 발생시 적용가능한 보험검토 등 업무환경 개선 권고
<p>「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지침」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보·시정권고 등을 건의하오니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0000공단 대표청렴옴부즈만 조은경 (서명 또는 날인)</p> <p>0000공단 이사장 귀하</p> <p>※ 첨부서류 :</p>	

4-2. 부패 관련 민원 조사·처리와 제도 개선 건의·요구

(2) 핫라인, 신고제도, 민원접수

-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청렴시민감사관 청렴상담창구 운영

청렴시민감사관 핫라인이란?

- ✓ 공단 임직원 비위행위, 직무관련 금품 수수행위, 알선청탁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를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청렴시민감사관)에게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청렴옴부즈만에게 민원을 접수(제출) 방법

1. 공사 홈페이지의 [옴부즈만 코너](#)(시스템)로 접수(민원제기)

시스템으로 로그인하여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과 민원요지를 작성한 후 세부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민원신청이 회사 또는 단체에서 제기하는 경우 대표자 등록 관인을 날인할 것)

2. 우편접수

고충민원 신청서 접수

(우)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실 옴부즈만 담당

3. 방문 접수

비밀보장을 위하여 직접 방문하시는 민원인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아래 옴부즈만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실 또는 12층 옴부즈만실로 방문하여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실 옴부즈만 담당(3410-7525)으로 문의 바랍니다.

4-3. 시정 요구 등의 이행실태 점검(사후관리)

(1) 시정 요구 조치사항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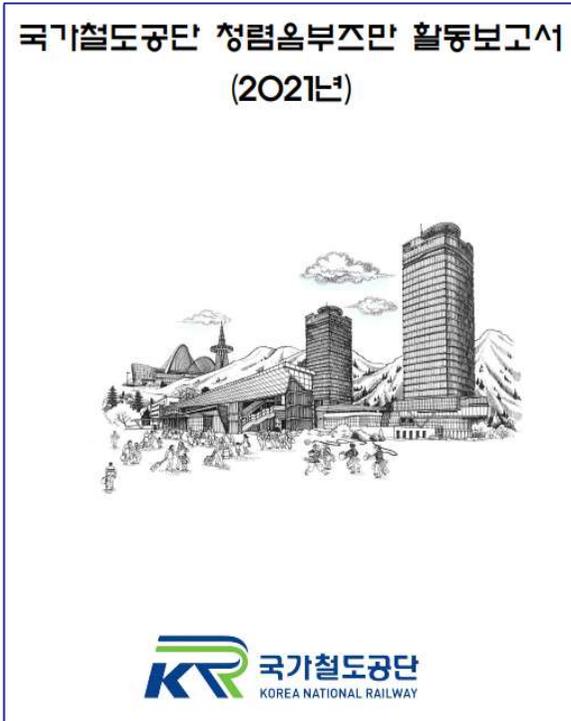
붙임 1

2022년 제2차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검토 및 조치사항

주요내용	검토내용
([] 위원) 중장기적으로 감사 인력 증원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기구 인력보강을 위한 증원([] 2) 요청
([] 위원) 주요 테마(수의계약, 시설안전 등)에 대해서는 소속·공공기관 감사인력으로 위탁감사 실시 - 본부 감사실은 결과 모니터링 방식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업무협의를 활용 공공기관 감사 정보 공유 및 감사인력 전문성 제고*
([] 위원) [] 기본계획 수립 등 파급효과가 큰 정책·계획에 대한 종합감사 필요 (관계부처, 지자체의 사업수행·이행관리 점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인력 부족(종감 7명), 감사대상기관(87개) 증가로 인한 감사주기 문제, [] 등 기관운영감사 이외 정책감사 투입 여력 한계 존재
([] 위원) [] 윤리센터 등 신생 기관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사, 컨설팅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감사 규정 개정* 및 사전컨설팅 기능 확대를 통한 계약 및 중요정책분야 사전 감사기능 강화

4-3. 시정 요구 등의 이행실태 점검(사후관리)

(2) 보고서(백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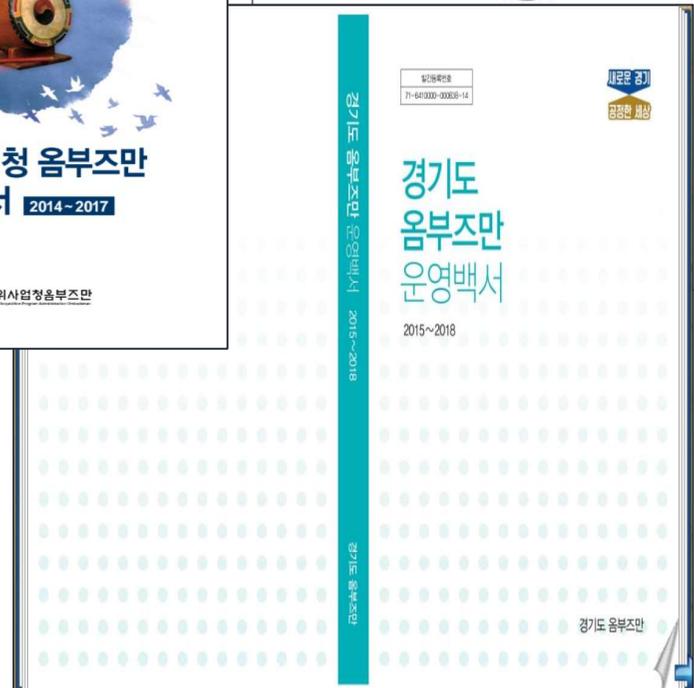


||| 순서 |||

- I. 일반현황
 - 설치근거 및 운영 목적
 - 청렴옴부즈만 구성
 - 추진경위
- II. 2021년도 청렴옴부즈만 활동실적
- III. 청렴옴부즈만 협의회 회의록

 - 제104차 청렴옴부즈만 협의회 회의록 5
 - 제105차 청렴옴부즈만 협의회 회의록 8

붙임 청렴옴부즈만 위원 현황



4-4. 부패방지(예방), 청렴 정책 자문, 평가 및 의견 제시

(1) 부패영향평가

‘민간과 함께하는 부패영향평가’ 추진 계획

□ 관련

- 「0000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부훈령 제000호, 2018. 00. 06., 제정)
- 2021년도 0000부 부패방지시책 추진계획 시행(감사담당관-0000, 2021. 5. 13.)

□ 그간 추진 경과

- 2020년 제1차 청렴시민감사관 서면회의 시 제안된 사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반영 필요가 있어 제도개선 추진
 - 0000부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시 청렴시민감사관이 참여하여 청렴성·공정성·투명성 등 증진(000 위원 제안)
- 2020년 ‘민간과 함께하는 부패영향평가’ 시 9개의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총 8건의 개선권고 → 6건 수용, 2건 수용 곤란

□ 세부 추진 계획

- (구성) 우리 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부패영향평가단’ 구성
- (대상규정) 우리 부 행정규칙 중 훈령, 예규
 - 현재 시행중인 규정(훈령 85건·예규 52건) 중 제·개정 이력 오래된 규정 및 부패취약 규정 10건
 - <붙임1> 위원별 부패영향 평가대상 규정

○ (평가기준) 4개 분야, 12개 평가 항목

평가분야	평가항목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 <붙임2> 부패영향평가 개요 및 기준

- (추진절차) ①부패영향평가단은 행정규칙을 평가기준에 따라 분석·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제출 → ②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소관 실·국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통보 → ③소관 실·국은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이행하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

· <붙임3> 부패영향평가 검토의견(서식)

· <붙임4>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식)

□ 추진 일정

- 부패영향평가단 검토(9.8.~9.15.)
- 소관 실·국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통보(9.17.)
- 소관 실·국 개선권고사항 이행 및 결과 제출(~10.22.)
 -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사유 제출(~9.30.)

붙임2

부패영향평가 개요 및 기준

I. 부패영향평가 의의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

II. 부패영향평가 추진근거

- '05.12.29. 부패방지법을 개정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06.4.1. 시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2조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지침,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개선권고, 평가결과의 통보 등
 - 공직유관단체장의 부패영향평가 요청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6항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계기관 협의 시 부패영향평가를 함께 요청

III. 부패영향평가 대상 및 실시 주체

1]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제·개정 법령안의 경우 각 기관이 소관법령안 및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 현행 법령은 위원회가 직접 선정한 평가대상과제(법령)에 대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실시

2]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 자치법규(조례, 규칙), 공공기관등의 내부규정(정관, 사규 등)

- 원칙적으로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 아래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직접 평가** 실시
 - 부패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등 **위원회가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하여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등

IV. 부패영향평가 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 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붙임3**부패영향평가 검토 의견(서식)** 평가대상 조문

-
-
- *

 평가기준

-
-
- *

 현황 및 문제점

-
-
- *

 검토결과

-
-
- *

붙임4**부패영향평가 조치 결과 통보(서식)**

관리번호

I. 대상 행정규칙	1. 행정규칙명			
	2. 소관부서			
II. 개선요구 사항				
III. 조치내용 (미반영시 사유 및 근거)				
IV. 기타 참고사항				
작성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연락처

4-4. 부패방지(예방), 청렴 정책 자문, 평가 및 의견 제시

(2) 기관 청렴시책 의견제시

제2호 안건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과제 실효성 검토”에 관한 사항
--------	--------------------------------

연번	과 제 명	담당부서
1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셀프 감사 제도 도입	
2	투명한 물품 구매 실시	
3	업무용 차량 관리의 투명성 제고	
4	청렴 알리미 SMS 서비스	
5	투명한 유연근무 실시	
6	외부 초빙교수 선정절차 투명성 제고	
7	청렴 칭찬 릴레이 운영	
8	사업별·회계연도별 자금 및 예산관리 투명화	
9	ERP내 계약 프로세스 관리시스템 도입	
10	복무관리 전사적 시스템 보완	

[청렴옴부즈만 의견제시]

☐ 독창성 및 수용성 높은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수립

- ☞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 모형 개편 관련, 형식적인 피로감을 줄이고, 기관 차별성 및 독창성이 반영된 수용성 높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필요

☐ 공익·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제도 정비

- ☞ 신고자의 책임감면 범위 확대, 신고자의 보상금·포상 대상 확대 등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익·부패신고자 보호 제도 정비 필요

4-4. 부패방지(예방), 청렴 정책 자문, 평가 및 의견 제시

(3) 사업소(산하기관) 평가

2022년도 유관 공공기관 반부패시책 평가 계획

□ 추진목적

-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노력과 성과 등을 점검하여 기관 및 공직자의 청렴 수준 제고
 -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직유관단체 또한 공공기관에 포함, 청렴·반부패 인식 제고 필요

□ 평가 기본 방향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노력도 평가항목을 준용하되, 유관 공공기관의 규모·특성 등을 감안해 평가항목 조정
- '22년 반부패 주요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의 운영 기반 구축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평가지표 설계

□ 주요 평가항목 [4개 분야 9개 항목]

분야	22년 평가항목	비고
1.반부패 계획수립(20)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정성
2.청렴 생태계 조성(25)	1. 기관장 반부패 의지 및 청렴정책 추진 노력	정성
	2.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기반 구축 <신규>	
	3.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및 활동 실적	
3.부패통제 실효성 확보(25)	1.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정성
	2.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3. 청렴교육 활성화	
4.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30)	1.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	
	2.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확산 <신규>	

4-4. 부패방지(예방), 청렴 정책 자문, 평가 및 의견 제시

(4) 공모전 심사·선정 평가

- ✓ 우리 기관에서는 청렴슬로건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총 126건의 청렴슬로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응모된 청렴슬로건 126건 중 우수한 15건을 선정하는 작업을 청렴 시민감사관님들께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 청 청렴옴부즈만 서면심사 계획

- 2022년 [] 청 청렴옴부즈만 서면심사 계획
 - (일자) 2022. 12. 27.(화) ~ 12. 29.(목)
 - (심사 방법) 서면심사
 - 공모전 제출작 277개 중 상·중·하 각 등급별 5개 작품 선정
 - (심사 안건) “ [] 청렴 삼행시 ” 공모전 심사
 - (협조 사항) 평가 의견서 결과(붙임) 12월 29일(목)까지 송부*

□ 추진경과

- 청렴콘텐츠 공모 : 7월 27일 ~ 8월 31일 (일반인 및 공단직원)
- 공단 청렴메신저 1차 평가 : 9월 14일 ~ 9월 18일
- 청렴옴부즈만 2차 평가 : 9월 21일 ~ 9월 25일
 - * 평가대상 : 총 36건 (표어슬로건 21건, 사진 8건, 웹툰·카드뉴스 4건, 영상 2건, 수기 1건)

□ 접수현황

- 표어·슬로건 289건, 사진 12건, 웹툰·카드뉴스 1건 등 총 310개 작품 접수

구분	표어·슬로건	사진	수기	웹툰·카드뉴스	영상	합계
계	289건	12건	1건	6건	2건	310건
공단직원	133건	11건	-	5건	2건	151건
일반인	156건	1건	1건	1건	-	159건

4-4. 부패방지(예방), 청렴 정책 자문, 평가 및 의견 제시

(5) CEO면담, (청렴)윤리경영위원회 참여 및 의견 제시



4-5. 부패 예방 교육(행동강령 등)



반부패법령 주요 위반사례

고위공직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례 중심



순서

- I.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사례
- II.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 III.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
- IV.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사례



부패방지 권익위법

위반사례 3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한 사례

사례

파신고자는 ○○시 국장(서기관)으로 공무와 관련해 △△시 등에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출장여비신청서를 작성해서 출장여비를 지급받음



위반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부패방지) 제4호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이익충돌 회피) 제1항 위반

위반 유형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

위반대상

자본적 4급 이상
○○시국장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1

계약 관련
부정청탁
사례

사례

○○의회이장이 관할 지자체의 수익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해당 지자체 소속 업무 담당자에게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청탁하여 계약체결

○○의회이장 관내로 1천여백만원, 계약금 500만원, 월급 300만원, 300만원 부채



위반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제7호 위반

위반 유형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당사자로 선정 되도록 요구

위반대상

○○의회이장



4-6. 감사 요구·참여(감사 동행 등)

(1) 감사 요구·참여

- ✓ 이해관계자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하거나, 연구용역이 특정업체로 편중되는 등 특혜유착의 소지가 없는지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 필요
- ✓ 소속 연구원 감사로 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확보

감 사 요 구 서

1. 건명 : 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2. 감사요구 내용

■○○연구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소속 연구원이었던 ○○대 교수에게 10건 4,430만원, △△대 교수에게 7건 2,950만원을 지급(15.10월 국정감사)

■공공기관 연구용역 입찰과정에서 '권소사업 구성을 통한 과제수행'을 강조하기에 친분이 있던 타 대학 교수에게 공동연구를 제안했는데 "사실 해당 연구는 본인을 비롯한 일부 대학연구소가 이미 오래전부터 협력 수행중이며 다른 업체가 과제를 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음(네이버 뉴스, 2017.8.9.)

■○○개발원은 「2017년 ○○개발원의 사업별 위탁조사 통합운영」 수행업체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수정해 입력하는 등 특정업체에 용역을 배정해준 의혹(연합뉴스, 2018.2.16.)

■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해관계자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하거나 특정업체로 편중되는 등 특혜·유착의 소지가 없는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

20 7. .

공단 청렴시민감사관 조 은 경 (인)

공단 이사장 귀하

4-6. 감사 요구·참여(감사 동행 등)

(2) 감사품질평가

✓ 감사품질평가

- 감사실에서 내부 감사를 진행한 뒤, 피감인에게 감사과정에 대해 자체평가 실시
- 감사계획, 감사요구자료, 감사과정, 감사 전문성 및 윤리성, 감사결과, 사후관리 등

감사 품질평가를 위한 심층인터뷰

✓ 감사보고서 검토 및 자문

- 일상감사 준수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초안)에 대한 검토

최근 우리 기관에서는 일상감사 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결과 보고서(초안)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요청드리오니,
관련 자료 검토 후 회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7. 모니터링(민원, 비위 제보, 인사(징계), 채용 참관(입회) 등)

(1) 채용 참관

수 신: EK윤리지식연구소장
(경유)

제 목: 청렴음부즈만 모니터링 참여 요청(2022년도 [] 원
1차 신규직원 채용 면접, 202[] .)

1. 우리 [] 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공정성 점검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청렴음부즈만으로 위촉되어 활동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아래와 같이 「2022년도 1차 신규직원 채용」에 대한 청렴음부즈만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 등을 파악을 하고자 하오니 해당 회의에 참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활동목적 : 2022년도 신규직원 채용 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에 대한 점검
나. 대상활동 : 2022년도 1차 신규직원 채용 면접 참관
다. 활동일시/장소 및 활동 청렴음부즈만

청렴음부즈만	업무명	담당자	참관일	장소
조은경 위원	2022년도 1차 신규직원 채용 면접	[]	[]	[]

※ 상황에 따라 일부 시간 및 장소는 변동 가능

라. 활동방법 및 유의사항

- 1) 면접전 교육시간(12시 55분)부터 면접 종료시까지 참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사전회의 시간에 해당 업무 담당자가 청렴음부즈만의 참관목적을 간략하게 안내할 예정이며 첨부된 청렴음부즈만 보안서약서 징구 및 수당지급 관련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 (첨부양식 활용)
- 3) 청렴음부즈만은 소속기관 및 이름을 비공개로 하여야 함([] 원 청렴음부즈만(청렴시민감사관)으로 소개)
- 4) 참관 시간에는 핸드폰 사용이 제한되며 부득이 통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통화
- 5) 참관하면서 면접진행에 관여 및 면접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제도개선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참관결과보고서"에 제시

마. 참관결과보고서 제출

- 참관결과보고서 양식을 이용하여 청렴음부즈만 활동 이후 5일 이내 메일로 제출

4-7. 모니터링 (민원, 비위 제보, 인사(징계), 채용 참관(입회) 등)

(2) 입찰평가 참관(입회)

청렴시민감사관 산업융합형 메타버스 플랫폼 평가 참관

평가일정		청렴시민감사관		연락처
4.12(화)	산업융합형 메타버스 플랫폼 (분야)			
4.13(수)	산업융합형 메타버스 플랫폼 (분야)	조은경	(사)EK윤리지식연구소 소장	
4.15(금)	산업융합형 메타버스 플랫폼 (분야)			
4.22(금)	산업융합형 메타버스 플랫폼 (분야)	조은경	(사)EK윤리지식연구소 소장	
4.25(월)	산업융합형 메타버스 플랫폼 (분야)			

4-7. 모니터링(민원, 비위 제보, 인사(징계), 채용 참관(입회) 등)

(4) 채용 면접심사 평가위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 년 공무원 근로자 채용 면접심사 평가위원 위촉 및 참석 협조 요청

1. 관련 : 부 감사담당관실 공무원 근로자 채용 공고(제20 호)

2. '2 년 우리 부서 공무원 근로자 채용을 위한 면접심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면접심사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귀 기관의 위원이 심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장소 : '2 (금) 10:00 ~, 정부세종청사 5층 중회의실(호)

나. 응시인원 : 명(1차 서류심사 합격자)

다. 채용인원 : 명

* 채용분야 : 공무원 근로자(행정보조원, 감사 및 청렴 업무 등 행정보조 업무)

라. 평정요소 : ① 공무원 근로자로서의 자세, ②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③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마.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평점점수를 합산, 최고 득점자 1명 선발

바. 진행방법 : 개별 면접(분 내·외)

사. 심사위원

구분	소속	직위	위원명	비 고
1	EK윤리지식연구소	대표	조은경	외부위원

4-8. 그 외 청렴 문화 확산 활동 등

(1) 노조면담 및 권익위 권고사항 논의



4-8. 그 외 청렴 문화 확산 활동 등

(2) 임직원 인터뷰, 의견청취, 소통창구



5. 청렴한 사회를 향한 한 걸음

5-1. 국민권익위원회 :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화

주요활동		주요내용
운영협의회 개최		○ 6회(정기 4회 : 3·6·8·12월 / 수시 2회 : 6·9월)
개선권고 사항		○ 9건 개선권고 ① 해양수질자동측정소 시설운영 및 소모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4건 ② 마산 지사 방제대응센터 “공정관리 및 공사감독” 등에 관한 업무개선 : 2건 ③ 해양환경조사선 건조사업 “안전관리사항” 등에 관한 업무개선 : 3건
현장방문		○ 3회 · 마산만 3개 해양수질자동측정소(6월) 및 마산지사 방제대응센터 건립 현장(6월), 국고 지원 선박 건조 현장(10월)
기타 활동	청렴교육	○ 1회(8월) · 강의주제: “윤리경영의 의미와 역할” / [redacted]
	자체감사 참여	○ 1회(7월) · 급여지급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태 점검 / [redacted]
	신고센터 운영	○ 청렴옴부즈만 “핫라인(Hot-Line)” 운영 [연중]

5-2. 운영기관 : 성과 제고

[시민감사관 운영 시 고려사항]

- ✓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자격요건 · 전문성/인원수/운영횟수 등)
- ✓ 권한은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가? (최소한 vs 최대한)
- ✓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인가? vs 형식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 ✓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 ✓ 기관 내 어디까지 보고할 것인가?
- ✓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방안
- ✓ 결과에 대한 공유 및 환류

01.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권한 확대 → 제도화

- ▶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권한 확대 등 수행기반 확충과 원내 윤리경영 정책, 대내외 평가, 제도개선 등 다각적 활동 전개에 위한 **지침 개정**

01 윤리경영 정책 적극참여 

02 연임제 개편 

03 환경변화 반영 (감질행위 근절) 

윤리경영 정책 적극 참여

- ▶ 원 윤리경영(반부패 청렴 등) 의사결정 기구인 '윤리경영위원회(위원장 원장)' 외부 위원으로 의사결정 참여

연임제 개편

- ▶ 기간제한 연임제(1회 연임) 폐지 (*임기 2년) 및 활동성과 등에 따른 지속연임제 도입
- ▶ 본인의 사임이사 표시, 금고 이상의 선고 등 해촉 사유외 지속 신분보장
- 기관 윤리경영 시정 연속성 · 이해도 · 전문성 제고 및 부패방지 · 청렴 향상을 위한 활동지원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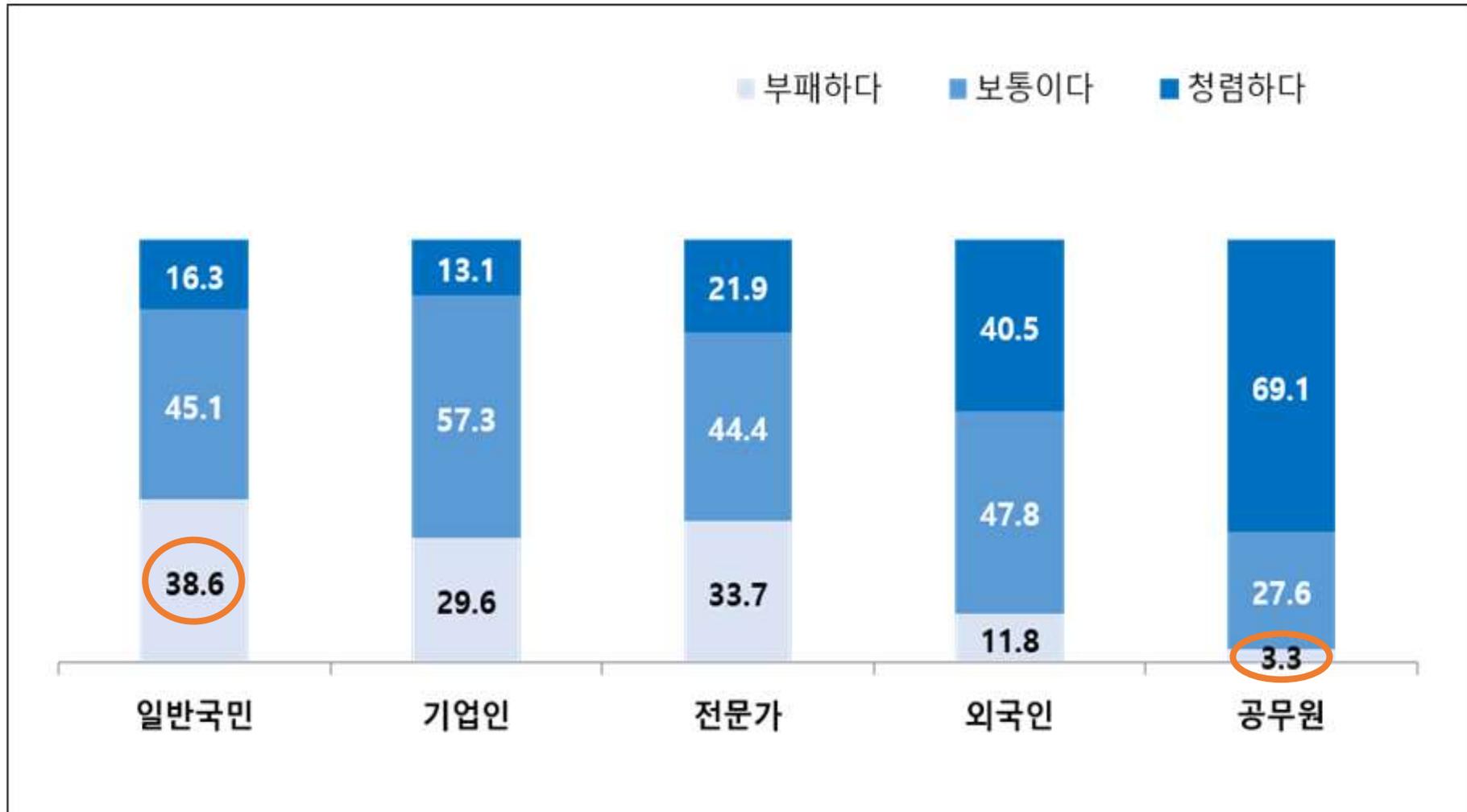
환경변화 반영

- ▶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범위를 감질행위까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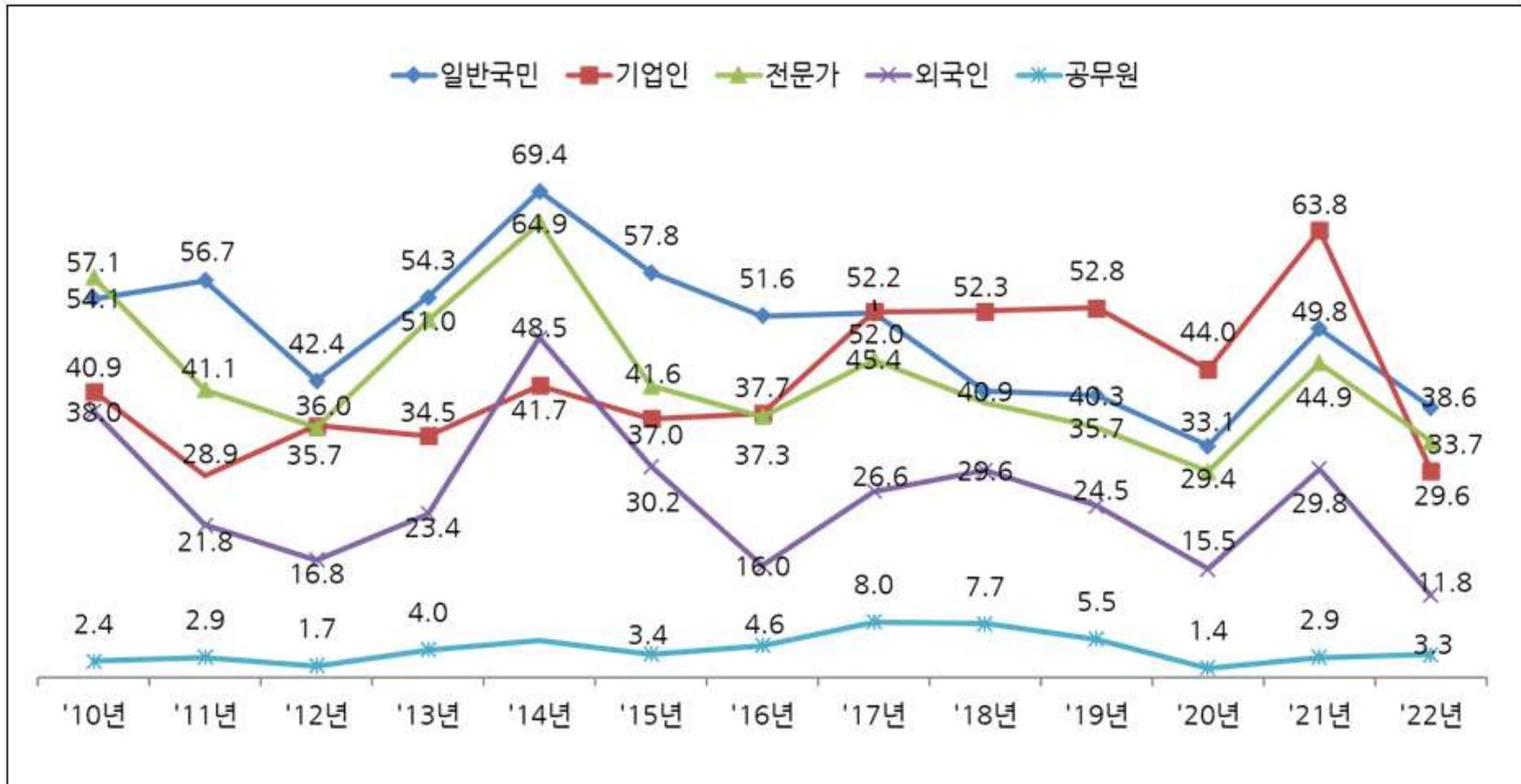
5-3. 청렴시민감사관 : 적극적 관심과 참여

(2022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단위: %)



공직사회 '부패하다' 인식 추이 (2022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THANK YOU

